

용역계약 합의 해지 계약서

주식회사 알파피플(이하 “갑”)과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이하 “을”)는 2025년 5월 12일 체결한 “외주 용역 계약(이하 ‘원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하며, 후속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2026년 1월 12일(이하 ‘해지일’)**부로 원계약을 합의 해지한다. 본 합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원계약상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합의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한다.
- 본 합의는 앱 서비스 런칭 전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제2조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의 확정)

- 원계약 제8조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을이 개발하여 제공한 모든 결과물(소스코드, 기술 문서 등 일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한다.
- 을은 갑에게 본 결과물을 사용하여 앱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비독점적, 재판매 불가, 재허락 불가한 사용권(License)**만을 부여한다. 갑은 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경영권 변동이나 본 사업 부문이 제3자에게 매각(M&A)되는 경우에 한하여, 갑은 본 사용권을 해당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양수인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용권의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제3조 (사용의 제한 및 위반 시 조치)

- 갑(또는 제2조 제3항의 양수인)은 을이 허용한 목적 외에 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재허락하거나, 소스코드를 분리하여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갑이 본 조 또는 제2조를 위반하여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을은 부여된 사용권을 즉시 철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 본 합의서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후, 갑과 을은 원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는 본 합의의 내용 및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 정보를 본 합의 해지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1월 12일

(갑)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인)

(을)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인)